

●전남지방우정청공고 제2025-130호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따라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체납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 감면 등으로 압류를 해제하고, 국세징수법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에 따라 압류해제 통지를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18일

전남지방우정청장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압류해제 통지 공시송달

1. 제 목: 국유재산사용료 체납자 압류해제 통지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동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 나.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및 동법 제58조(압류 해제의 절차 등)
-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 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5.8.18.~9.1.)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단위: 원)

대 상 자		압 류 해 제 내 역			
성 명	주 소	압류해제일자	압류재산	징수과목명	압류금액
잇츠*	전남 순천시 교량3길 **	2025. 7. 30.	예금채권	국유재산사용료	5,416,940

5. 체납한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 감면등으로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2)600-475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